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[별지 제18호의8서식] <개정 2025. 6. 4.>

#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서(신고증명서)

※어두운 난( )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 (앞쪽)

| 접수번호 | 접수일시 | 처리기간 7일 |
|---|---|---|

| | | | |
|---|---|---|---|
| 신고인 | 개인사업자 [ ] | 성명 | 생년월일 |
| | 법인사업자 [ ] | 법인명(상호) | 법인등록번호 |
| | ①주소(주 사무소 소재지) | | 전화번호 (유선)<br>(휴대전화) |
| | | | 전자우편 |

| ②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 | | ③민간임대주택의 종류 | | ④주택 유형 | ⑤전용 면적 (㎡)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건물 주소 | 호 번호 또는 층 | | | | |
| | | 공공지원 [ ] 장기일반 [ ] 단기 [ ] | 건설 [ ]<br>매입 [ ] | | |
| | | 공공지원 [ ] 장기일반 [ ] 단기 [ ] | 건설 [ ]<br>매입 [ ] | | |
| | | 공공지원 [ ] 장기일반 [ ] 단기 [ ] | 건설 [ ]<br>매입 [ ] | | |
| | | 공공지원 [ ] 장기일반 [ ] 단기 [ ] | 건설 [ ]<br>매입 [ ] | | |
| | | 공공지원 [ ] 장기일반 [ ] 단기 [ ] | 건설 [ ]<br>매입 [ ] | | |
| | | 공공지원 [ ] 장기일반 [ ] 단기 [ ] | 건설 [ ]<br>매입 [ ] | | |
| | | 공공지원 [ ] 장기일반 [ ] 단기 [ ] | 건설 [ ]<br>매입 [ ] | | |
| 합계 | | | | | |
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42조제4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12에 따라 위와 같이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**특별자치시장**
**특별자치도지사**
**시장·군수·구청장** 귀하

| 첨부서류 | 뒤쪽 참고 | 수수료 없음 |
|---|---|---|

위와 같이 임대차모집 신고를 했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**특별자치시장**
**특별자치도지사**
**시장·군수·구청장** 직인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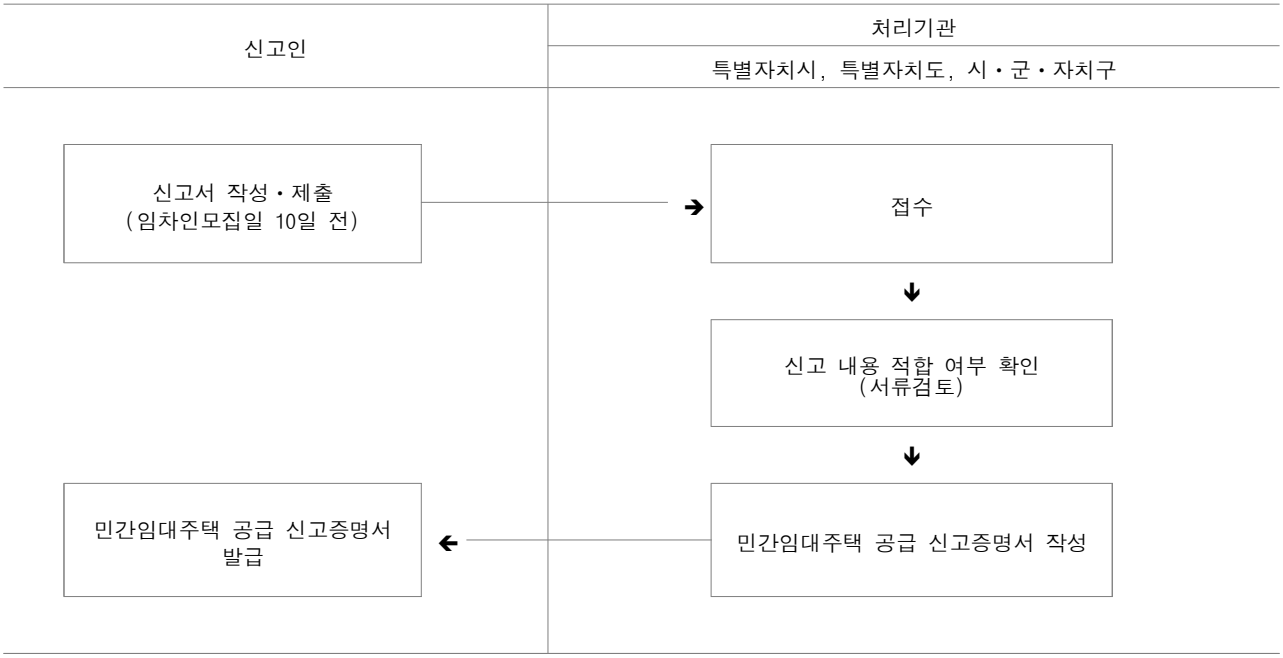
| | | |
|---|---|---|
| 신고인<br>제출서류 | 1.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임차인 모집계획안<br>가. 민간임대주택 공급 현황 및 임대 조건<br>나.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<br>다. 토지임대계약서·토지사용승낙서 등 토지확보 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민간임대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만 해당한다)<br>라. 토지 및 주택에 설정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<br>2. 신고대상 주택이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49조제1항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보증계약의 보증서 | 수수료<br>없음 |
| 담당 공무원<br>확인사항 | 민간임대주택의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| |

##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

1. ①신고인의 주소란에는 신고일 기준으로 신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적습니다. 임대사업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는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등록지로 자동 갱신됩니다.
2. ②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란에 민간임대주택의 도로명주소(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만 지번주소)를 적고, 호 번호 또는 층란에는 각 호·세대·실(室)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층 또는 호를 적습니다.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실을 제외한 나머지 실만을 적을 수 있습니다.
3. ③민간임대주택의 종류란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,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 중 하나에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하고, 건설임대 또는 매입임대 중 하나에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4. ④주택유형란에는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되는 건축물의 용도로서 단독주택, 다가구주택, 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, 오피스텔, 기숙사(일반기숙사 또는 임대형기숙사)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.
5. ⑤전용면적란에는 해당 주택의 실제 전용면적을 적습니다.
6.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42조제4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12에 따라 임차인 모집을 하는 임대사업자는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,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,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67조제2항제1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## 처리절차

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
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